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26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선교·김석기·김정재

김위상 • 우재준 • 김성원

윤상현 · 정동만 · 김상훈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제78조의3,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로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제1항 중 "「형법」 제127조 및"을 "「형법」"으로 한다.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7 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의5(종전의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8조의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2.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71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거
	나 제78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
	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u>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제78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	원 의제) ①
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은 <u>「형법」 제127조 및</u> 제129	「형법」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	
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78조의3(</u> 벌칙) (생 략)	<u>제78조의4(</u> 벌칙) (현행 제78조의3
	과 같음)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	제78조의5(벌칙) 다음 각 호의 어
<u>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 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 1.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 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 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2.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